입학사정관 선발 및 업무에 관한 규정

제 정 2012. 4. 개 정 2014. 6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잠재력있는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사정관제 도입 동기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선발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실화 및 확대로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.

제2조 (정의) 입학사정관이란 채용입학사정관 및 전환입학사정관, 교수사정관, 내부.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.

- 1. 채용입학사정관이란 입학사정관 채용 절차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- 2. 전환입학사정관이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전환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- 3. 교수사정관이란 본교 교수 중 입학사정관 업무를 주관하는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- 4. 내부위촉사정관이란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에서 추천되어 임명된 입학사정관을 말하다.
- 5. 외부위촉사정관이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따라 외부인사 중에서 임시로 위촉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
제3조 (목표) 이 규정은 잠재력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목적에 맞는 전문적인 입학사정 관을 확보하여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내실화 및 확대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적용)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입학사정관에 적용된다.

제5조 (선발) 이 규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입학사정관을 선발한다.

- 1. 채용입학사정관은 공개선발의 원칙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및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후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.
- 2. 전환입학사정관은 학교인사규정에 따른다.
- 3. 내부위촉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 전형 해당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.
- 4. 외부위촉사정관은 공정성, 윤리성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입학취업처장의 추천으로 임용한다.

제6조 (사정관의 수)

- 1. 채용 및 외부위촉사정관은 전형예정 학생 50명당 1인을 임용한다. 단, 학교의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.
- 2. 전환입학사정관은 학교인사규정에 따라 임의로 조절하여 임명한다.
- 3. 내부위촉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학과당 2명을 임명한다.

제7조 (조직) 입학사정관실은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.

- 1. 입학사정관 실장(책임입학사정관)
- 2. 전임입학사정관
- 3. 내.외부위촉사정관

제8조 (업무)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따른 일반업무
- 2. 내부.외부교육 추진 및 참가
- 3.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직무연수 참가

4. 기타 입학사정관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제9조 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요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중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